

제20회 노동권익포럼(2021-1)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과제

일시 | 2021년 5월 25일(화) 15:00~17:00

장소 | 온라인 Zoom 회의실

<https://snu-ac-kr.zoom.us/j/82073336251>

^^^
서울노동권익센터

〈개 요〉

- 제 목 : 지방정부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과제
- 일 시 : 2021년 5월 25일 화요일 15:00~17:00
- 장 소 : 온라인 Zoom회의실(<https://snu-ac-kr.zoom.us/j/82073336251>)

〈프로그램 진행〉

시 간(120분)	주 요 내 용
15:00~15:10 (10분)	개회사 및 인사 이남신 (서울노동권익센터 소장)
15:10~16:00 (50분)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16:00~16:40 (40분)	가장 필수적이지도 보이지 않는 노동을 위해, 노동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토론 1.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토론 2.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16:40~17:00 (20분)	청중 토론, 질의/응답
17:00	폐회

〈목 차〉

[발제문]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1

백승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토론문]

가장 필수적이자 보이지 않는 노동을 위해, 노동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25

이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33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발 표 문〉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백 승 호

(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백 승 호 (가톨릭대학교)

서울노동권익센터 제 20회 노동권익 포럼 2021. 5. 25.

목 차

- I. 서론
-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 III.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 IV. 정책 제언

* 이승윤, 백승호, 박고은, 김규혜, 박성준. (2021).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I. 서론

서론

COVID19에 따른 감염병 국면에서, 중앙정부 차원의 거리두기 조치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배송, 물류, 건설, 공공안전관리, 돌봄, 육아, 의료, 위생 등의 영역에서 **일상과 생존의 존속을 위해 대면노동이 지속되고 있음.**

필수노동자들은 감염병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지위에서도 매우 취약한 이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필수적인 노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저임금과 고용불안 상황에 놓여있음.**



본 연구는 **필수노동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필수노동자 연구를 체계화하고 **지방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제안하는 것이 목적임.**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해외 주요국의 필수노동자 정의 및 지원사례를 검토하고, 성동구의 필수노동자에 대한 심층인터뷰와 서베이 조사를 기반으로 지원체계 및 정책방향을 제안함.**

3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필수노동자의 개념

1)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 코로나19 이전부터 식품가공업, 배달업, 보건의료업과 같이 '경제활동의 유지'에 핵심적이지만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던 산업들은 **감염병 국면에서 '필수적인(essential) 산업'**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key workers)'라고 정의함.

-원격 및 비대면으로 수행할 수 없는 필수적인 서비스 업종에서 일하는 '최전방노동자(Frontline worker)'는 전체 노동인구도 여기에 포함되는데, 보건의료 종사자, 점원, 식품가공 종사자, 건물 관리인, 농업 종사자, 트럭 기사 등을 필수노동자 범위에 포함시킴.

2) 국제노동기구(ILO)

: 바이러스를 극복하고 인간이 갖는 **기본적인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일하는 노동자들이 감염 국면의 최전방(frontline)**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러한 정의에 해당하는 경제 부문을 제시하는 형태로 필수노동자를 정의함.

해당 경제 부문은 간호사, 의사, 시설 관련 업무(human health related work), 사회복지 관련 업무(social work), 청소 관련 업무(support work)로 요약된다. 이들은 감염병과 직접적으로 싸우며 **대면 노동**을 지속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음.

4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필수노동자의 개념

3) 국제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 ‘보건의료 노동자(health worker)’를 “보건의료 산업에 종사하고 자격과 무관하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로,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는 “코로나19 감염병 시기동안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노동자”로 정의함.

대중교통 종사자, 환경미화원 등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식료품점, 배달 서비스업 종사자 등과 같이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영업을 허용된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또한 포함함.

4) 유럽연합(EU)

: 봉쇄 조치를 시행한 EU의 3개 국가(스페인, 이탈리아, 독일)에서 세부 업종별 봉쇄 조치 적용 여부를 통해 각 산업의 필수적인 정도를 구분하였음. 분석 결과, 모든 국가에서 필수적이지 않은(non-essential) 산업과 완전히 필수적인(fully essential) 산업이라는 양극단을 구성, 필수적이지 않은 업종에는 관광업, 숙박업, 외식업이 있고, 완전히 필수적인 업종에는 식품 및 제약 생산업, 수도전기 등의 공익적 업종(utilities), 운송업, 의료업이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음.

5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해외사례

1) 미국

: 국토안보부 산하의 CISA(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에서 발표한 ‘필수 산업 분류’에 따르면, 필수노동자는 보건의료, 통신, 정보기술, 국방, 식품 및 농경, 운수, 에너지, 공공행정 등과 같이 ‘주요한 인프라의 지속을 위해 필수적인 운영 및 서비스를 수행하는’ 광범위한 집단을 의미.

- CISA의 연방 지침안은 필수노동자를 대면노동이 강제되는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사회 중추를 이루는 영역까지를 포괄하는 지침임. 지침의 구체적인 적용에 관해서는 ① 지역에서 실행되고, ② 주정부에서 관리하며, ③ 이를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을 명시함.

CISA의 필수노동자 식별 리스트	
1. 헬스케어/공공보건	11. 정보통신부문
2. 법 집행자, 공공안전, 최초대응자	12. 기타 통신 중 핵심부문
3. 교육	13. 필수 제조업
4. 역거리 및 농업	14. 유태물질 관리
5. 에너지(전기전력)	15. 금융서비스
6. 에너지(석유)	16. 화학
7. 에너지(천연가스)	17. 망위산업
8. 주차원 및 폐수	18. 상업시설
9. 교통 및 물류	19. 주거/보호시설, 주택 및 부동산 관련
10. 공공업무 및 기반시설	20. 위생제품 및 위생서비스

• 연방 지원정책

: 펜실베이니아, 버몬트, 루이지애나 등 3개 주는 연방 CARE act 기금을 활용하여 민간 및 공공 부문 근로자를 포함한 필수노동자에 대한 위험 부담금을 지급함. 다른 몇몇 주에서는 연방 구호 기금을 사용하여 긴급구조원, 보건 관련 간병인과 같은 더 좁은 범위의 최전방 필수 근로자에게 위험 급여를 제공함.

- 미국의 주정부별 및 연방정부별 필수노동자 관련 정책은 대부분 임금보조의 형태로 이루어졌고, 많은 경우 1회성 지급으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가짐.

6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해외사례

2) 캐나다

: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 대응하여 새로운 지원정책을 추가함과 동시에 기존의 제도(고용보험)에도 관련 조항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대응함.

-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정책, 돌봄노동자 대상 정책,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조치 중인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긴급임금보조정책, 기업 대상 긴급대출제도 등이 시행됨.

• EWSP(Essential Worker Support Program)

캐나다 중앙정부 차원의 필수노동자 지원 직접적인 정책으로, 보건의료 및 사회서비스, 돌봄노동, 청소, 교통 및 물류, 환경미화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필수노동자 자격범위를 설정하고, 이들 중 저임금인 노동자의 임금을 인상하는 형태로 지원을 제공하였음. 여기에서 필수노동자는 연방정부가 아닌 각 주에서 세부적인 자격범위를 결정하고 지원범위를 설정하였음. 지원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각 주정부가 25% 보조하는 형태로 지원이 제공됨.

7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해외사례

3) 영국

: 영국 정부는 COVID-19 확산에 대응하고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문 및 직업군을 핵심노동자(key worker or critical worker)로 지정함.

- 총 8개 부문의 일부 직업군을 코로나19 대응 관련 필수노동자로 지정하고 있음(<표2-10> 참조).

• 영국의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 1) 필수노동자 자녀 돌봄/교육 보장
- 2)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우선 접종 계획
 - 노인 요양원 종사 인력(1순위) 및 보건복지 부문 필수노동자들(2순위)은 최우선순위
- 3) 돌봄 노동자에 대해 특별 급여를 지급함
 - 웨일스: 돌봄서비스 종사 인력 대상 (500파운드 정액급여 1회 지급)
 - 스코틀랜드: NHS 및 사회서비스 부문 돌봄 노동자 대상 (500파운드 보너스 제공)

[표 2-10] 영국의 필수노동자 직업군

부문	내용(직업군)
보건과 사회복지 Health and social care	의사, 간호사, 초산사, 구급요원, 사회복지사, 돌봄 노동자 등 봉사자를 포함하는 최전방 의료 및 사회복지 인력 뿐만 아니라 영국의 보건복지부문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인력; 의약품 및 보조장의 공급자 등 보건복지부문의 공급체인에 종사하는 인력 등을 특별히 포함하고 있음.
교육과 보육 Education and childcare	보육교사 및 교사, 관련 지원 인력, 사회복지사, 기타 코로나19에도 교육 전달을 위해 활성화되어야 하는 인력
핵심 공공 서비스 Key public services	사법제도 운영을 위한 필수인력: 종교계 직원: 필수적인 최전방의 서비스를 전달하는 자선단체 및 그 종사자; 사망자 관리업무 책임자; 기타 등 광범 위층 관련 직원
정부 행정 부문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코로나19의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핵심 행정인력: 보조금 지급 등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군
식료품과 필수재화 Food and other necessary goods	식품의 생산, 유통, 판매 및 배달 인력; 그 밖의 필수재 공급을 위한 핵심인력
공공안전 및 국가 보안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경찰 및 지원인력: 국방부 공무원, 도급업자 및 군인; 소방구조인력 및 지원인력: 국기병/취사국 직원; 국경 보안 유지 인력 및 교도소 직원 등
교통과 항공 Transport and border	코로나19 대응 기간에도 항공, 수상, 도로 및 철도 승객 및 화물 운송을 유지하기 위한 인력 포함: 공급망이 통과하는 운송 시스템의 종사인력 등
가스, 전기, 수도, 통신의 공공 서비스와 금융서비스 Utilities, communication and financial services	필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 유류, 가스, 전기, 수도 부문 필수 인력: 정보 기술 및 데이터 기반 시설 등 종사인력: 민간 할차력, 화학 및 통신 부문 (네트워크 운영, 한창 유지)인력, 콜센터 직원, IT 및 데이터 인력 등 주요 서비스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우편서비스 및 배달 인력: 폐기를 처리하는 인력

8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필수노동자의 개념

공유하는 핵심적 속성은
 '노동 현장에 물리적으로 나타나야만 하는 노동자', 혹은
 '사회, 가구 및 개인의 기초적인 삶이 유지되는데 있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와 생산품을 제공하는
 노동자'로 수렴됨.

한편 해당 용어를 사용하는 기구나 국가가
 필수노동자의 어떤 속성에 보다 초점을 두는가에 따라 다른 용어가 사용된다고 할 수 있음.

예를 들어 **필수노동자(essential worker)** 용어는 국가의 경제·사회·공공 핵심 업무를 강조하는 개념,
최전방노동자(frontline worker) 용어는 대면업무의 불가피성이 보다 강조되는 개념으로 사용됨.

II. 필수노동자 개념 및 국제사례

필수노동자의 개념

<필수노동자 정의>

		필수업종*	
		필수성 높음	필수성 낮음
대면노동의 불가피성	낮음	전기, 수도 등의 공공분야의 사무직	(예) 문화, 예술 등
	높음	돌봄노동자, 보건의료 종사자, 운송업의 버스기사, 식료품 매장 계산원 및 택배노동자 등	(예) 관광, 숙박업 등

출처: 이승윤 외 2021

- 1) 시장성이 낮은 경우 경기불황 시에
 소득 뿐만 아니라 일자리의 존속 자체도 위험에 빠지게 됨
- 2) COVID-19 전염병 확산 시 건강과 소득에 직접적인 위험이 발생하게 됨

*필수업종으로는 보건과 사회복지, 교육과 보육, 핵심 공공 서비스, 정부 행정 부문, 식료품과 필수재화, 공공안전 및 국가 보안, 교통과 항공, 가스, 전기, 수도, 통신의 공공 서비스와 금융서비스 등이 제안될 수 있음 (표2-10 참고).

III. 성동구 필수노동자 실태조사

▶ 서베이 조사

[표] 직업 재분류별 사례수

구분	예시	사례수	
성동구 내 돌봄, 보육관련 종사자		519(100%)	
직업 재분류	관리자	원장, 시설장 등	30(5.8%)
	전문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영양사, 치료재활사, 간호조무사, 생활복지사, 교육복지사 등	223(43.0%)
	서비스종사자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지원사, 노인돌보미, 보육 및 교사보조서비스종사원, 기타 돌봄 및 보건서비스 종사원, 조리사, 병원배식원 등	250(48.2%)
	단순노무종사자	청소원, 경비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조리보조원 등	16(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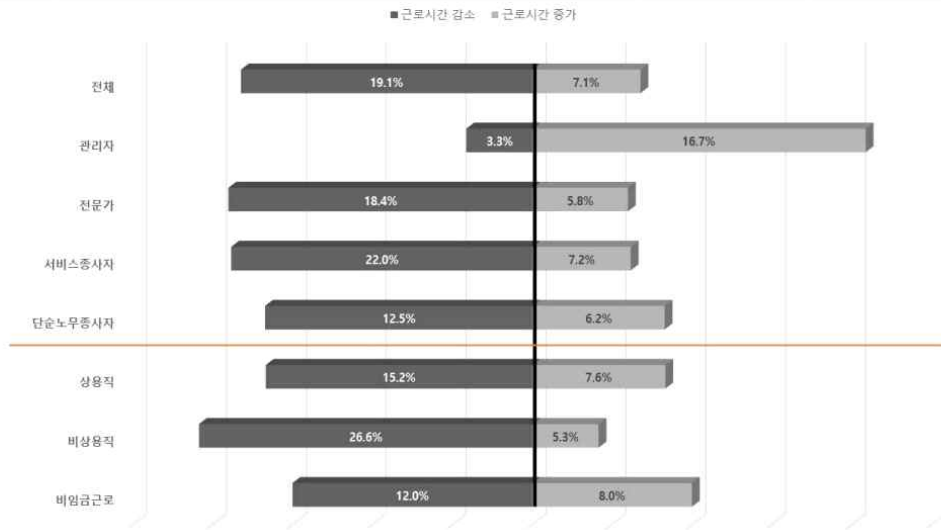
11

[표1] 경제활동 종사상 지위 재분류 별 사례수

구분	예시	사례수	
■ 전체 ■		519(100%)	
종사상 지위 재분류	상용직	무기계약, 정규직	303(58.4%)
	비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아르바이트 및 시간제, 파견/용역/사내하청 노동자	188(36.2%)
	비임금근로	프리랜서/특수고용직 노동자, 자영업/개인사업자, 무급가족 종사자	25(4.8%)
	일하지 않음	-	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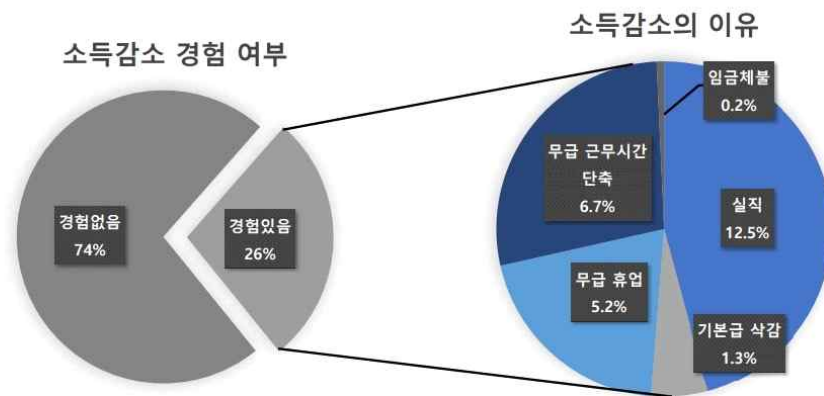
12

▶ 근로시간 변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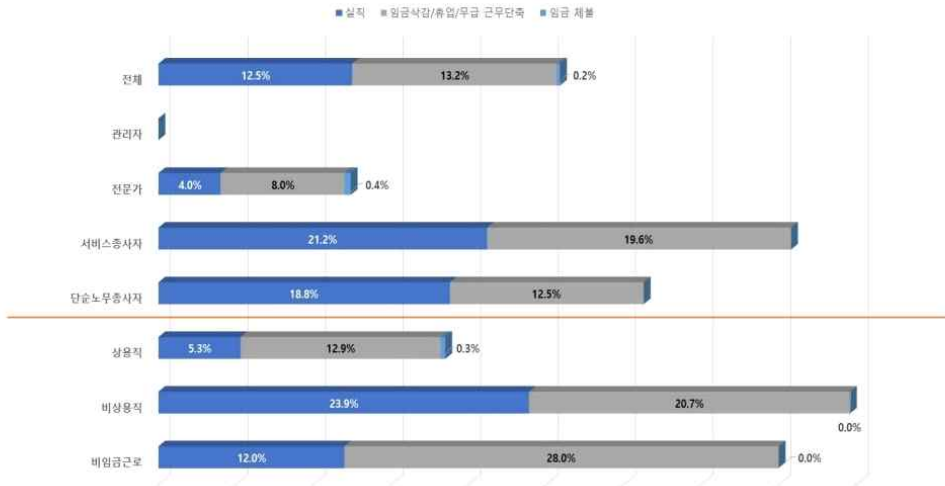
13

▶ 소득감소 경험 및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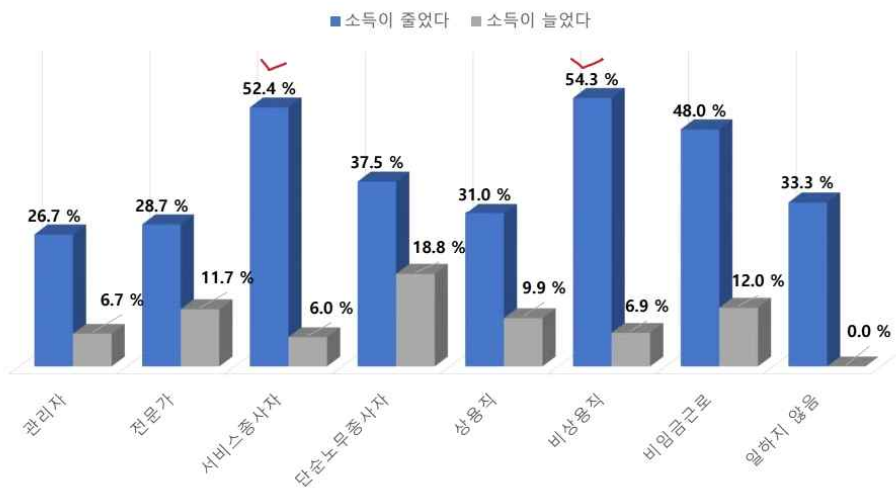
14

▶ 소득감소 경험 및 이유



15

1년 전과 비교한 가족의 최근 3개월 총소득의 변화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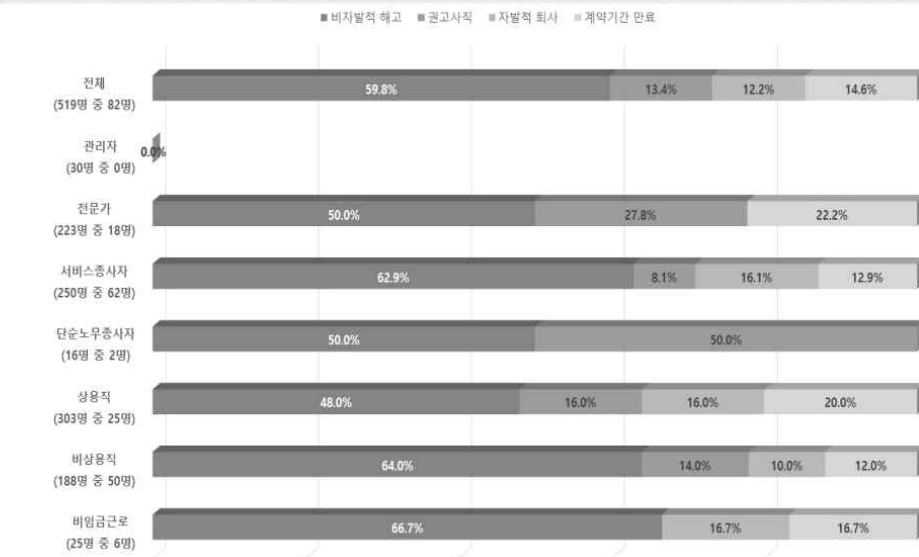
16

▶ 비자발적 실직경험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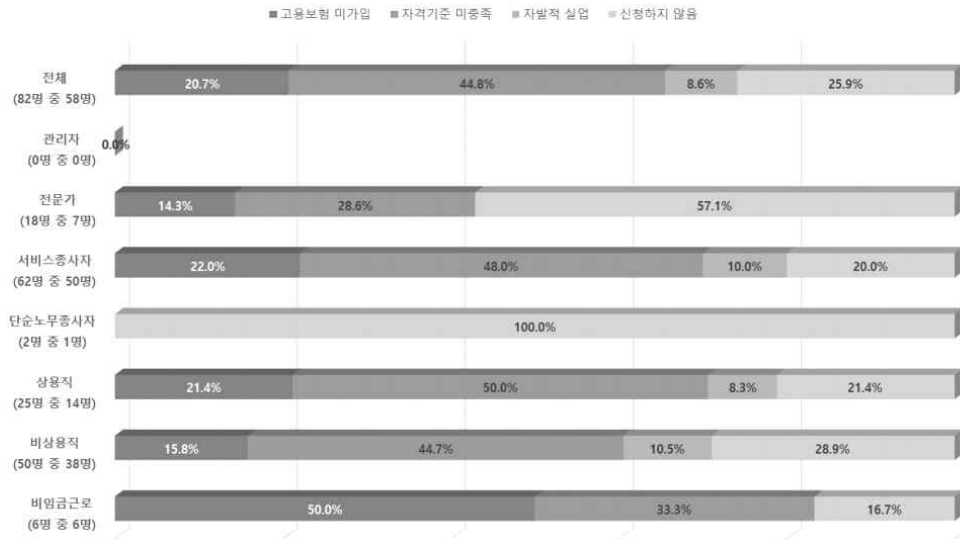
17

▶ 비자발적 실직경험 여부



18

▶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19

▶ 자유로운 연차사용 가능 여부



20

▶ **대면노동의 불가피성**

- 대면노동의 물리적 밀접성, 빈번성, 재택근무 전환의 가능성 등
- 각 문항의 응답을 점수화하고 이를 합산하여 산출 (16점이 최고점수임)

[표] 대면노동의 불가피성

(단위: 평균점수(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점수
■ 전체 ■	(519)	13.6(2.1)
직업 재분류	관리자	(30) 13.9(1.6)
	전문가	(223) 14.0(1.7)
	서비스종사자	(250) 13.2(2.4)
	단순노무종사자	(16) 12.2(2.3)
종사상 지위 재분류	상용직	(303) 13.9(1.9)
	비상용직	(188) 13.1(2.3)
	비임금근로	(25) 13.1(2.3)

21

▶ **지원 우선순위**

[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

(단위: 명/%)

우선 순위	직업 재분류			
	관리직	전문가	서비스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1순위	공산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공산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공산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위험수당 지급
2순위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의 공가 허용	건강 관리 지원 (필수노동자 지정병원, 독감예방 주사 등)	고용안정 (정규직으로의 전환 등)
3순위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의 공가 허용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위험수당 지급	생활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4순위	대체인력 지원	급여수준 개선	급여수준 개선	일이 줄어도 고용 유지 (정부가 임금 보전을 지원)
5순위	위험수당 지급	일이 줄어도 고용 유지 (정부가 임금 보전을 지원)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22

[표] 코로나 19와 같은 사회적 재난에 대해 필요한 지원의 우선순위(계속)

(단위: 명/%)

우선 순위	직업 재분류		
	상용직	비상용직	비임금근로
1순위	공산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건강 관리 지원 (필수노동자 지정병원, 독감예방 주사 등)	건강 관리 지원 (필수노동자 지정병원, 독감예방 주사 등)
2순위	밀접접촉으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의 공가 허용	급여수준 개선	공산품 지원 (마스크, 손소독제 등)
3순위	위험수당 지급	위험수당 지급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통한 실업급여 확대
4순위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확진 시 대응 매뉴얼 (서비스 공백 대처 등)	생활비 지원 (긴급재난지원금 등)
5순위	급여수준 개선	일이 줄어도 고용 유지 (정부가 임금 보전을 지원)	위험수당 지급

23

▶ 직장 경험(해당 항목에 20%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만 순위 매김)

코로나 19로 직장에서 경험한 일들	관리직	서비스	저숙련	단순
		전문직	서비스직	노무직
의무적 필수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나 피로도 증가	1	2	2	-
대면 업무가 불가피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2	1	1	-
코로나로 인해 돌봄교실 등 각종 시설이 문을 닫거나, 재가요양등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졌지만 귀하는 필수업무로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어려움	3	3	3	-
특정지역 방문 금지 등 과도한 사생활 제한	-	5	-	-
연차휴가 사용 강요	-	4	-	1

24

▶ 직장 경험(해당 항목에 20%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경우만 순위 매김)

코로나 19로 직장에서 경험한 일들	상용직	비상용직	비임금 근로
대면 업무가 불가피하여 코로나 감염에 대한 불안감	1	1	1
의무적 필수업무에 따른 업무량이 늘어나 피로도 증가	2	-	2
코로나로 인해 돌봄교실 등 각종 시설이 문을 닫거나, 재가요양등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 졌지만 귀하는 필수업무로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기 어려움	3	-	-

25

▶ 다른 조사와의 비교

항목	구분	비율
노동시간 감소경험	직장갑질 119 3차 조사	줄었다(28.6) / 변화 없다(61.9) / 늘었다(9.5)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줄었다(19.1) / 변화 없다(73.8) / 늘었다(7.1)
감소된 평균 노동시간	경제활동인구조사	평균 9시간 감소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평균 15시간 감소
개인 소득 변화	직장갑질119 3차조사	줄었다(34.0)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줄었다(26.0)
가구 소득 변화	직장갑질119 3차조사	줄었다(41.5) / 변화 없다(49.2) / 늘었다(9.3)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줄었다(40.3) / 변화 없다(50.9) / 늘었다(8.9)
1년 후 경제적 상황	직장갑질119 3차조사	나빠질 것(17.7) / 지금과 비슷(51.4) / 나아질 것(30.9)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나빠질 것(21.6) / 지금과 비슷(58.6) / 나아질 것(19.8)
업무 강도 변화	직장갑질119 3차조사	낮아졌다(18.4) / 변화 없다(60.4) / 높아졌다(21.2)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낮아졌다(10.4) / 변화 없다(60.7) / 높아졌다(28.9)

26

▶ 다른 조사와의 비교

항목	구분	비율
실직 경험	직장갑질119 3차조사	있다(15.1)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있다(15.8)
실업급여 미수급 이유	직장갑질119 3차조사	미가입(54.1)/자격기준미충족(26.2)/자발적실업(9.8)/신청안함(9.8)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미가입(20.7)/자격기준미충족(44.8)/자발적실업(8.6)/신청안함(25.9)
코로나 감염 안전성에 대한 인식	직장갑질119 3차조사	안전하지 않다(59.9)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안전하지 않다(58.1)
자유로운 연차사용	직장갑질119 3차조사	그렇지 않다(39.9)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그렇지 않다(60.3)
우울감 인지	직장갑질119 3차조사	심각하다(19.2)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심각하다(24.1)
직장에서의 경험 3순위	직장갑질119 3차조사	사회적거리두기어려움(24.1)/업무량증가(22.4)/연차사용강요(15.8)
	성동구필수노동자조사	대면업무불가피(34.9)/업무량증가(25.1)/가족돌봄어려움(17.7)

FGI 조사

• **조사대상:** 성동구 필수노동자 중에서도 가장 다수를 차지하는 돌봄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음. 2020년 10월 기준 파악된 **성동구 필수노동자 6,153명 중 복지, 돌봄 분야(2,558명) 및 보육 분야(1,782명)를 포함하는 돌봄노동 종사자가 약 70.5%(4,340명)를 차지하고 있음.**

• **FGI집단 구성:**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요양보호사 및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를 중심으로 2개의 FGI집단을 구분하고, 6~7명씩 각 집단에 포함하여 구성함.

- 연구참여자 선정시 해당 직종의 **종사이력이 3년 이상**의 참여자로 제한하여, 해당 부문에서의 **노동경험이 풍부한 면접자를 선정**하고자 하였음.

- 직종별로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시설 종사자와 방문(재가) 종사자가 모두 포함되도록 각 2인을 선정**함. 또한, 어린이집 보육종사자는 **담임교사 뿐만 아니라 보조교사도 포함되도록** 하였으며, 유형별 다양한 기관에서의 종사경험이 포함될 수 있도록 **국공립, 민간, 가정형 어린이집이 골고루 포함되도록 선정**하였음.

집단	번호	직종	직무	기관유형	총경력	근속년수	연령
G1	G1-1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교사	국공립어린이집	6년	3년	45세
	G1-2	어린이집 보육교사	주임교사	국공립어린이집	13년	13년	45세
	G1-3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교사	민간어린이집	7년	7년	42세
	G1-4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교사	민간어린이집	17년	6년	44세
	G1-5	어린이집 보육교사	담임교사	가정형어린이집	15년	4년	57세
	G1-6	돌봄교사 (생활복지사)	방과후 초등돌봄	아동복지시설* (초등돌봄센터)	5년	1.5년	44세
G2	G2-1	요양보호사	시설돌봄, 교대제	공공/노인요양시설 (요양원)	9년	8년	63세
	G2-2	요양보호사	시설돌봄	공공/데이케어센터	9년	3년	68세
	G2-3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시간제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	10년	4년	64세
	G2-4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시간제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	5년	1년	50세
	G2-5	요양보호사	방문돌봄, 시간제	공공, 민간**/재가장기요양기관	13년	13년	68세
	G2-6	장애인 활동지원사	방문돌봄, 시간제	민간/장애인활동보조 지정기관	9년	9년	54세
	G2-7	아이돌봄이	방문돌봄, 시간제	공공/건강가정지원센터	12.5년		65세

FGI 조사

1) 일상적 불안정성

① 높은 노동강도 및 휴식권의 제한

: 필수노동자들은 약정 근로시간 및 업무범위 외 초과근무를 빈번히 수행하며 강도 높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휴게시간 및 휴가제도를 제대로 활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남.

- 보육부문 및 시설돌봄: 현실과 부정합한 인력배치 기준
- 방문돌봄: 대체인력 제도의 부재

②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

: 대면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필수노동자들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들의 민원이나 분노를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등 업무 스트레스와 감정노동을 경험하고 있었음.

③ 높은 고용 및 소득 불안정성

- 방문형 돌봄 종사자의 경우 이용자의 돌봄 수요에 따라 고용 안정성이 민감하게 변화하는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음.
- 민영화, 상품화 방식으로 서비스 제공기관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대부분의 돌봄 노동자이나 **국공립 어린이집을 제외한 민간부문의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경우 최저임금 수준의 저임금을 받는 등 높은 소득 불안정성을 경험하고 있었음.**

29

FGI 조사

2) 코로나19와 불안정성

① 인력부족의 심화 및 업무량의 증가

: **코로나19 확산 이후 업무량 증가 및 인력부족의 심화에 따라 노동강도는 더욱 증가하고 휴게시간 및 휴가 사용 또한 더욱 어려워졌음.** 소득 및 방역 업무 등 업무범위가 확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력의 출입이 제한됨에 따라 기존의 인력 부족 문제가 더욱 심화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음.

② 안전 및 건강 관련 위험의 증가

: **코로나19의 확산 속에서 이들은 안전 및 건강 관련 위험에 더욱 노출되었음.** 이들은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그러나 돌봄 노동자들은 돌봄 대상자들의 감염 예방 및 안전 보장에 대해 강도 높은 책임을 부여받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었음.

③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고용·소득 불안정성 심화

: **보육 및 돌봄 부문의 필수노동자들이 기존에 경험하고 있던 고용·소득의 불안정성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불안정성 심화의 메커니즘에는 부문별 차이가 존재하였음.

- 방문돌봄: 소득이 월 노동시간에 비례하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호자의 퇴직 또는 재택근무로 대상자의 가족돌봄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노동시간 및 그에 따른 소득이 감소하는 경험**을 하고 있었음.
- 보육부문: 시설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고용 불안정성을 경험하였음.

30

FGI 조사

3) 필수노동자들의 공적 지원제도 경험

① 불충분한 인력지원 제도의 경험

: 높은 노동강도 및 휴식권 제한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적된 인력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이들은 불충분한 인력지원제도를 경험하고 있었음.

- 방문돌봄: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공적 지원제도는 부재하며, 민간 부문의 기관 차원에서 대체인력 지원을 기대하기도 어려운 상황임.
- 보육부문: 대체인력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어린이집은 지자체별로 마련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파견 받을 수 있음. 이러한 대체인력 제도의 도입에 따라 종사자들은 휴가 및 병가 등의 법정 휴가제도 사용시 도움이 됨.

②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관련 안전보건 조치의 경험

: 방문 돌봄 부문에서 특히 열악하였음.

- 보육부문: 마스크 지급, 손소독제 비치, 공간 및 기구 소독 등 어린이집 등 기관 차원의 방역 조치가 이뤄지고 있음. 특히, 보육교사들은 마스크 지원 등 성동구에서 필수노동자들을 위해 마련한 조치들에 대해 대면 노동자들을 위한 유일한 사회안전망 경험으로서 지자체의 노력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표현하기도 하였음.
- 방문돌봄: 방문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는 체계적으로 마련 및 실시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특히,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마스크 지급 또한 받지 못 하는 등 종사기관에 따른 지급 현황의 차이 또한 발견되었음.

31

FGI 조사

3) 필수노동자들의 공적 지원제도 경험

③ 소득보장제도의 경험

- 방문 돌봄 종사자들의 일상적인 실업급여 제도로부터의 배제: 사회서비스 부문에 종사하는 방문돌봄 종사자들은 대부분 사회보험은 가입이 되어 있지만, 재가 요양보호사 등 시간제 일자리가 중심이 되는 방문돌봄 노동 부문에서는 하나의 일자리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즉각적인 소득손실을 경험하더라도 이에 대한 소득보장제도로부터 배제되고 있음.
- 방문돌봄 종사자들을 위해 마련된 한시지원금의 경우 엄격한 지원기준으로 인해, 19년도 연소득은 1000만원 이상이었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노동시간이 상당부분 감소하여 소득상실의 위험을 경험한 경우 등, 실질적으로 종사자들이 코로나19로 인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감소의 위험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으로 파악됨.

32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1.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 (중앙정부)

1) 실업급여 실효성 제고

: 방문돌봄 노동의 실업급여 부정합성을 해결하기 위해 부분실업의 인정 등 실업급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하나의 일자리에서 비자발적 실직을 경험하게 되더라도 고용보험 제도상 실업으로 제도화되지 않아 실업급여로부터 배제됨.
-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확대에 대한 논의를 넘어서, 부분실업에 대한 실업인정 등 실업급여의 실질적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한시지원금 기준 완화

: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심화된 고용·소득 불안정성에 대응하여, ① 시설형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유지지원금을, ② 방문돌봄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한시지원금 지급기준의 완화가 필요함.

- 보육부문 및 시설돌봄: 코로나19로 인한 이용자 수 감소에 따른 종사자 근무시간 축소, 감원 등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사자의 고용안정 및 기관의 숙련된 인력 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방문돌봄: 앞서 방문형 종사자들의 소득보장과 관련하여 중앙정부 차원에서 마련된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에 대하여 엄격한 지원조건으로 인한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였음.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방문돌봄 종사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소득감소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시지원금 지원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33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1.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 (지방정부)

1)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 시설형 종사자들의 인력부족 및 높은 노동강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인력배치기준의 현실화가 필요함. 여기에는 대부분의 보육부문(어린이집 및 방과후돌봄센터) 및 시설돌봄 부문(노인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등)이 해당됨.

- 보다 근본적으로는 보육교사 대 아동 비율, 요양보호사 대 이용자 비율 등 현행 인력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영유아보육법 및 노인복지법 등 관련법의 개정이 필요하나, 경기도와 서울시 동작구의 사례에서처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교사 대 아동비율을 축소하고 이에 대해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적으로 시행해볼 수 있음.

2) 대체인력제도 실효성 제고 및 마련

: 필수노동자들의 휴식권 제고를 위해 부문별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함.

- 보육부문: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등 이미 대체인력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보육부문의 경우, 이러한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보육부문의 경우 대체인력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에 대한 보다 세밀한 진단을 통해 현행 대체인력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돌봄부문: 대체인력을 지원하는 공적 지원제도가 부재하므로 대체인력 제도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방문 종사자의 경우 이용자 특성 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돌봄 노동의 특성으로 인해 대체인력 활용의 어려움이 존재함. 뿐만 아니라 방문 돌봄 노동이 갖는 일대일 노동의 관계적 특성 및 민간 서비스 기관의 영세성을 고려하면, 민간 부문에서 자체적으로 대체인력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려움(박고은 2020).

34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1.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 (지방정부)

3)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 보육 부문의 고용 불안정성 문제와 관련하여 어린이집 운영에서의 공공성 강화가 필요한.

Ex) 서울시 동작구 보육청 사업 사례

: 동작구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2016년부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대폭 강화하여 보육청 사업을 추진, 위탁운영하기 시작하였음(서울시여성가족재단 2019).

- 이에 따라 보육교사의 통합인사시스템을 구축하고(채용, 전보, 근무평가 및 승진제도 진행), 보육교사 역량강화 및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관련 사항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담당하도록 하고 있음.
- 이를 통해 동작구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어린이집 이직 시에도 경력, 퇴직연금 및 사회보험 가입이력 등이 단절되지 않고 이어지도록 하고 있음.

4)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

- (필수)노동 종합지원 부서 → 일상시기에 종합적인 노동정책 전달. 재난시기 재난 대응 노동정책 지원
- 민관 협력 (필수) 노동지원 사업 적극 발굴

35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1.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 (노동센터)

1) 필수 노동자의 노동권의 보호

- 필수 노동자 노동권 침해 관련 다양한 사례 수집 및 무료 상담, 권리구제

2) 필수 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 조직화 지원

- 사용자와의 관계 뿐 아니라 방문돌봄 노동자의 경우 이용자와의 관계에서 다양한 어려움 경험함. 이들 사례를 수집하고 대처 방안 등 지원 뿐 아니라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조직화 지원
- 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이해대변 기구 조직화는 필수노동자에 국한되기 보다 모든 일하는 사람을 포괄할 수 있도록 접근해야함

36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2.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중앙정부)

1)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우선지원 필요

: 필수노동자들은 필수 업무로 인해 생산과 사회 서비스 제공의 최일선에서 감염위험 등 각종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업무수행이 최일선에서 직접적으로 대면접촉을 통해 이루어짐. 따라서 이들에 대한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은 필수노동자들의 보호 뿐 아니라,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은 국민건강보험제도를 통해 우선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음

2) 안전수당 지급 확대

: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염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위험수당 지급이 필요함.

- 위험수당 지급: 영국, 독일 등 돌봄 인력 지원체계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일시적 급여(돌봄보너스)를 지급하여 코로나 19 최일선에서 힘들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돌봄 노동자들에 대한 노고를 인정하면서도 인력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인 바 있음(일자리위원회 2020).
- 필수노동자들은 대면노동의 특성상 감염의 위험에 대한 불안을 경험하고 있음. 위험수당 등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직무의 위험성에 대한 임금보상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37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2.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중앙정부)

3) 가족돌봄 지원체계 및 가족돌봄 수당 등 지원 필요

: 필수노동자들은 가족내에 아동이나 노인 등 돌봄 대상자가 있다하더라도, 필수적인 업무를 위해 출근해야하며, 재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돌봄시설 등이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될 경우 가족돌봄에 공백이 발생함을 호소하고 있음

- 대체인력제도의 마련을 통해 가족돌봄 휴가가 가능하게 하는 방법 뿐 아니라, 가족돌봄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위한 가족돌봄 수당이 적극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음.
- 영국의 사례와 같이 돌봄시설, 학교 등에서 필수노동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등원 또는 등교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38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2.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지방정부)

1) 방역물품지원 확대

: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이 경험하고 있는 감염 관련 위험에 대응하여 방역물품 지원 확대가 필요함.

- **방역물품지원 확대:** 방문 돌봄 종사자의 경우 체계적인 안전보건 조치가 마련 및 시행되지 않고 있고, 기본적인 마스크 지원조차 받지 못 하였다는 사례도 보고되었음. 따라서, **보호장구의 직접 지원 및 비용 보조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역물품 지원을 확대**하고, 이에 대한 내용을 기관 평가에 포함시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음.

2) 방역전담 인력지원 제도마련 필요

: 방역업무 등 코로나19로 인해 증가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안정적인 인력지원 제도의 운용이 필요함.

- 분석결과, 2020년 7월 이후 실시된 서울시 희망일자리지원사업에 따른 방역업무 수행 인력 지원이 이러한 문제의 해소에 일부 도움이 되었으나, 해당 지원제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됨에 따라 조기 중단되는 등 연속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했던 것으로 나타남.
- 공공근로사업과 연계하여 보육 및 돌봄 관련 시설에서의 소득 및 청소년업 등 방역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39

IV. 정책 제언: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 분담

2.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노동센터)

1)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 필수노동자들은 감염위험에 대한 불안과 업무량 증가 등으로 인해 상당한 우울감을 호소하기도 함

- 이에 대한 정책 대응으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제고 필요

2) 기관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체계화된 대응 메뉴얼 제작

: 코로나19 방역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방문돌봄 부문에 대한 이용자 및 보호자 대상의 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방문돌봄 부문의 경우, 돌봄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고용주 및 노동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 및 보호자 또한 방역 지침을 이행해야 할 주요 행위자로서 인식될 필요가 있음.
- 서울시의 '서울시 돌봄 서비스 이용자 교육 자료 개발·보급' 사업에서는 자치구를 이용자(보호자) 교육 주체로서 지칭하며 그 역할로서 이용자(보호자) 대상 교육 자료 배포, 교육 내용 개발 및 업데이트 등을 수행할 수 있음. 이와 같이 노동센터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코로나19 방역 지침 관련 이용자(보호자) 대상의 교육 내용을 개발 및 업데이트하여 배포하는 등, 이용자 및 보호자가 코로나19 관련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지자체의 노동정책 전달 체계로서 재난 대응 노동정책 수요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40

〈토 론 문〉

가장 필수적이지도 보이지 않는
노동을 위해, 노동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가장 필수적이지 보이지 않는 노동을 위해, 노동센터는 무슨 역할을 해야 하나?

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정책기획실장)

1. 필수노동 논의의 의의, 특징, 역할

1) 필수노동자 법률과 조례의 의의

-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의 재난과 위기 상황 속에서 기본적인 사회기능 유지업무에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필수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과 지원정책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적 의미

2) 필수노동자의 특징

- 첫째, 임금노동자 형태로 고용된 기간산업의 노동자와는 다르게 특수고용이나 프리랜서인 경우가 많음. 따라서 고용이나 산업재해 보험 적용 대상도 아니며, 통계에 잘 잡히지 않아 이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더라도 정책적인 대응이 힘들.
- 둘째, 고용 안정성이 낮음. 임금이 낮고 근무 여건이 취약한 편.
- 셋째, 노동강도가 높아 산업재해 위험이 있고, 주로 대면 업무를 담당.

3) 필수노동자 담론의 역할

- 사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현장에서 의료·배송·돌봄을 이어나가야 함. 그러나 이들은 감염에 취약할 뿐만 아니라 ‘필수’라는 용어에 걸맞은 처우도 받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배송이나 돌봄의 경우 상대적으로 비숙련/저임금 탓에 다른 누군가(주로 여성, 이주자 등)로 대체할(될) 수 있는 있다는 불안정성도 내포하고 있는 직종임.
- ‘필수’노동자는 결국 사회에서 꼭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만, ‘꼭 내가 아니어도’ 되는 노동자일 수 있다는 역설이 존재.
- 따라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관점이 중요하고, 많은 고민과 섬세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

요한 대목임. 필수노동자 담론에서 당사자들의 얼굴과 목소리를 찾기는 힘들. 시민의 일상에서 필수노동자는 얼굴이 보이고, 눈을 마주치며, 이름을 부르며 존중하는 상대가 되어야 함.

2. 필수노동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 새로 제정된 “필수업무지정및종사자지원·보호법(2021.5.18.)”에 따르면, ‘필수업무’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의 보호와 사회 기능 유지에 필요한 업무로,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

1) 재난시에만 필수노동인가? 일시적/한시적 존재 → 우선적 존재로

- 필수노동은 재난 상황에서만 필수적? 재난 상황일 때 인간의 안전과 생존에 관한 노동은 재난 상황이 아닐 때에도 당연히 필요함. 사실 대부분의 필수노동은 코로나19 시기 이전과 이후에도 필수적이었음. 인간의 삶에서 그간 너무 당연하고 필요한 노동이었던 것들이 위기 상황을 계기로 가시화되었을 뿐임.
- 필수노동자는 코로나 시대가 찾아낸 사람들임. 그림자 노동, 밑바닥 노동, 하청·특고·불안정·비정규직 등으로 불리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라는 우연한 계기로 ‘필수노동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은 아닐까?
- 필수노동자 지원·보호법에서의 정의하는 ‘재난 시의 노동자’는 필수노동자를 특수상황에서만 요구되는 제한적이고 임시적인 노동 직군으로 위치시킴.
- 필수노동이 코로나19 이전에도 분명히 존재했던 만큼 재난 상황에서만 노동으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야 함.
- 상시로 해고 위기에 내몰리고 부당한 처우를 당해도 ‘을 중의 을’이라 항의도 못 하는 필수노동자들을 ‘재난 시기’로 한정해 보호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낮음. 물론 없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특고나 프리랜서 신분이 많은 필수노동자들은 경제위기 앞에 속수무책으로 일자리를 잃곤 하기 때문에 보호법 적용을 아예 받지 못할 가능성도 큼.

2) 제한적 조치인가? 보편적 권리인가? 필수노동자의 지원과 보호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 보장으로, 노동기본권 해소 운동으로

- 방역 지도와 관리를 강화하고 방역 물품 지원을 확대는 최소한의 조치일 뿐임. 그동안 정부가 집중 관리를 하겠다고 말해 왔지만, 콜센터나 물류센터에서 집단 감염 사태가 끊이지 않았음.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을뿐더러 집단 감염으로 번지기 쉬운 열

악한 노동조건이 개선되지 않았기 때문임. 노동자들의 안전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떼려야 뗄 수 없는 문제임.

- 특고·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여전히 외면하는 것이 대표적임. 최저임금, 노동시간, 산업재해 등 최소한의 조건조차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는데 사용자들에게 조건 개선을 강제하기는 무망한 일임.
- 필수노동자에게는 우물이 필요한데 물 한 잔만 주는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정책은 ‘노동자성 없는 노동 보호’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보호보다는 일하는 사람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는 관점, 불안정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하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함.
- 필수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운동적 접근은 노동기본권 사각지대¹⁾ 해소 운동(+ 작은 사업장 문제, 비정형/새로운 형태의 노동에도 노동기본권을)

3. 필수노동자를 위한 노동센터의 역할

- 발표자께서 제안해주신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를 위한 제언(사례 관리, 상담, 권리구제, 이해대변 기구 조직화 지원), 재난 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대상자별 대응 매뉴얼, 필수노동정책 수요 발굴과 프로그램 개발)에 동의하고, 추가적인 논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재구성

1) 노동센터의 역할: 서비스 제공, 이해대변과 옹호, 조직화

① 서비스의 제공

- 필수노동에 대한 교육(예를 들어, 현장노동자들에게 직접 안전교육 수행), 캠페인(감사 캠페인을 넘어서 필수노동자의 노동기본권과 필수노동에 대한 시각을 바꾸는 캠페인), 상담과 권리구제

② 이해대변과 옹호

-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책(사업 개발) 마련과 지지
- 심리상담 연계, 재난시 대상자별 대응 매뉴얼 마련
-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담론 투쟁 필요. 예를 들어, ‘총알택배’니

1) 노동기본권 사각지대는 근로계약을 맺지 못했거나, 맺었더라도 근로기준법의 적용 밖에 있거나(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처럼, 실질적이든 법적이든), 최저임금법의 적용 밖에 있거나, 사회안전망에 들어와 있지 못한 노동자를 비롯한 초단기 계약이나 간접고용으로 인해 노동조건이 일방적인 경우에 놓여 있는 노동자(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새벽배송’이니 필수적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노동현실을 단지 노동조건을 조금 개선해서 유지한다거나, 돌봄노동자들에게 영웅이나 천사라는 호칭을 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됨.

- 택배노동이건 돌봄노동이건 바로 얼마 전까지 특별한 자격증 없이도 가능한 비숙련 노동이라며 그 가치를 평가절하하고 저임금을 당연시하던 사회가 변화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근본적인 전환의 조치들이 필요함.

③ 조직화

- 조직화 생태계(조직화하기 쉬운/유리한 환경) 조성/구축
- 필수노동자들은 통상 한 곳에 전속되어있지 않고 업무 성격상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쉽지 않음. 그러다 보니 노동조합을 비롯한 집합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조직을 결성하기 사실상 어려운 측면이 있음. 노동기본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임.
- 노동센터에서는 지역 노동커뮤니티, 자조모임, 소모임 지원사업의 경험을 활용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조직화 지원사업 개발

2) 정책/사업의 우선순위 결정

① 기준 마련

- 필수노동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에서 어떤 기준으로 범위를 지정하고, 한정된 예산 속에서 어떤 기준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나? 노동센터의 사업도 마찬가지로 고민이 필요.
- ‘대면의 불가피성’, ‘필수성의 정도’ 이외에 다른 기준은? 불안정성(고용형태, 소득, 노동기본권, 사회보장 등)은? 인적 속성에 따른 취약노동(여성/청년/노인 필수노동)을 우선적으로 고려?
- 감염과 과로, 고용안정,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급선무. 또 다른 우선순위는? 저임금 개선? 직종/업무에 따른 우선순위를 정해야

②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가 지원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과 기여

- 필수노동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에 당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 참여 → 필수업종 지정과 지원사업 결정 → 2021년의 경우, 추정 예산의 사업비를 구체적으로 마련
-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는 물론 민간분야까지 아우르는 노사민정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지역에서 공동선언 등을 통해서 필수노동자 지원 방식과 역할을 하게 하는 방안도 한 방법

3) 지방정부 상황에 맞는 정책 및 사업 개발

- 직종의 단순 나열보다는 지역사회에 맞는 필수노동, 필수업종, 업무 지정 필요하고, 그에 걸맞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 당연하게 들릴 수도 있는 지역 상황에 적합한 맞춤형 정책 추진 고민
- 한편, 모든 지역에 존재하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과 노동과정에 있어서도 차이가 없는 필수노동에 대한 대응도 필요함.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실제로는 지방정부 간 편차가 큰 필수노동은 그 격차를 줄이는 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도 고려
- 가령, 대표적으로 청소노동은 지자체별로 큰 편차가 존재. 필수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은 한파경보에도 일을 해야 함. 특히 최근 코로나19 이후에는 늘어난 쓰레기 양 때문에 한파로 작업 시간을 단축해도 민원이 들어오면 추가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함, 이런 작업 환경은 원청인 지자체의 의지가 강력히 필요함. 장기적으로 민간 의존 줄이고 지자체 공공책임으로 가야 할 것임. 폐기물 처리는 공공성이 강한 만큼 지방정부에서 직접 관리해서 청소노동자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필요
- 필수노동자 다수가 일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 문제 개선도 지역사업으로 고려

4) 이해관계자 정책 결정 과정 참여 통로 마련

- 국내에서도 법률과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스스로 목소리를 낼 창구조차 없는 이들도 여전히 상당수 존재하고, 분명 일을 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존재
-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논의가 논의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띠기 위해서는 필수노동자 지정 및 지원위원회에 노동자(당사자, 노동자위원) 참여는 물론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수단도 고려. 예를 들어, 노동자 참여플랫폼

5) 조례 개정: 필수노동자 지원 대상 확대, 노동기본권 확대의 방향으로

- 필수노동자 지원·보호 조례가 사실 노동계에 큰 공감을 얻지 못했던 이유 중 하나가 조례 제정 초기 상당수의 조례가 지원 대상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
- 필수노동자의 대부분이 프리랜서거나 특수고용노동자여서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이 많음. 그래서 보다 다양한 노동형태를 포괄하면서 실질적인 혜택이 사각지대 없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필요. 상위법이 확대되었기 때문에 개정 필요
- 필수노동자 지정/지원위원회 위원에 노동자위원 참여를 보장하지 않는 조례 다수

4. 토론을 마치며

- 지역에서 필수노동 지정을 둘러싼 논란을 줄이고, 필수노동 개념을 전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상상해야 함
- 코로나19 위기가 알려준 것은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저평가되던 수많은 노동이 실제로는 사회적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중요한 노동이었다는 점.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될수록 어떤 노동이 사회의 유지와 존속에 필수적인가를 둘러싼 논란은 격화될 수밖에 없을 것임.
- 누가 더 위험하고, 취약한지를 정의하고 선별해내는 ‘바닥으로의 경주’ 방식이 아니라 무엇이 ‘필수’인지 끊임없이 묻고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함.
- 사회적 가치에 비해 현저히 저평가된 필수노동이 어떻게 정당한 대접을 받도록 할 것인가, 필수노동자들의 사회적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시각에서 접근해야 함.
- 필수노동으로 인정받는 노동과 한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 필수적인 노동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것임. 그렇기 때문에 필수노동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제고를 위한 개념 투쟁이 필요한 지점이기도 함.
- 더 이상 그림자 노동, 밑바닥 노동, 하청·특고·불안정·비정규직, 취약노동자, 개인영업자 등으로 약자화되고 주변화된 이름, 노동자성을 부정당한 이름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노동’인 ‘필수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그 의미를 전복하는 정책과 사업을 상상해야 함.

〈토 론 문〉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권 오 성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필수노동자 지원에서 중앙-지방정부-노동센터의 역할」에 대한 토론문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먼저, ‘필수노동자 지원 정책: 중앙정부-지방정부-노동센터’에 관한 백승호 교수님의 발표를 통해 필수노동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과제에 관하여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충실한 발표를 준비해 주신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발표의 내용에 특별한 이견이 있다기보다는, 발표자께서 제안해 주신 제반 ‘정책 제언’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어떻게(HOW)’ 실현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1. 들어가며: 필수노동자의 보호 필요성과 관련 입법의 필요성

- COVID-19의 장기화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중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대면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보건의료·돌봄·배달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 등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한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고, 추진체계를 제도화하기 위한 복수의 입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지난 4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안(대안)」(이하 편의상 “법률안(대안)”이라고 함)이 의결되어 현재 공포를 앞두고 있음.
- 법률안(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① “필수업무”를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로 정의함(안 제2조제2호).
 - ② “필수업무 종사자”를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6조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3호).
 - ③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범위,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

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 등에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위원회의 위원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 등이 추천하는 사람, 전국적 규모의 총연합단체인 노동단체 및 전국적 규모의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하도록 함(안 제8조).
- ⑤ 지역별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및 주요 정책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및 제10조).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1조).

○ ‘재난’의 법적 정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豪雨), 강풍, 풍랑, 해일(海湓),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黃砂), 조류(藻類) 대발생, 조수(潮水),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나. 사회재난: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 재난에 대한 국가 등의 책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한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포함하는 개념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

를 짐. 그러나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는 공행정(公行政)의 전달체계만으로 수행이 어려움.

- 에센셜 워커(essential worker, 이하 편의상 “필수노동자”라고 함)의 보호와 이들에 대한 지원은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국가의 책무의 수행에 조력하는 노동자들에게 적절한 보호와 지원을 제공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재난 자체가 다양하기 때문에 각각의 재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의 필수업무의 범위도 다양할 수밖에 없음.
 - 따라서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도 구체적인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할 것임.
 -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등을 법률로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재난 상황의 다양성에 적시에 대응하기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 법률안(대안)은 (i) 필수업무의 개념, (ii) 구체적 재난 상황에서 필수노동자의 범위 지정을 위한 수권, (iii) 필수노동자 지원 등의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적 정당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설치 등을 규정하고, 구체적 재난 상황에서의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상당한 재량권을 부여하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법률안(대안)의 이러한 입법방향에 찬성함.

2. 필수노동자 보호에 관한 국가(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지방정부)의 역할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행정의 시원적 주체는 국가이나 국가는 국가로부터 분리된 법인격을 향유하는 공법인(公法人)을 설립하여 간접행정기관으로 활용하여 왔음.
 - 이러한 공법인을 ‘공공단체’라고 하는바, 공공단체 가운데서 국가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권한 것이 지방자치단체임.
- 이러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의 유형을 분류하면 자치사무(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로 대별됨.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하는 사무가 위의 3유형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사무의 성질에 따라 당연히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법령

이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됨.

- 지방자치법은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여 자치사무와 단체위임 사무를 구분하고 있음.

- 자치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존립목적이 되는 지방적 복리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책임과 경비로 처리하는 사무를 의미함.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은 자치사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아니하고, 다만 전형적인 것을 예시하고 있음.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하. 재해대책의 수립 및 집행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나. 지역의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
--

-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임받아 행하는 사무를 의미함.
 - 통상 단체위임사무는 지방적 이해관계와 전국적 이해관계를 동시에 가지는 사무로서 전국적 관점에서의 기준설정 및 통일적인 처리를 필요로 하는 사무인 동시에 지역주민의 생활에도 밀접하게 관계되는 사무임.
- 기관위임사무는 국가 또는 상급자치단체가 법령 등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처리를 위임된 사무로서, 원래는 국가기관에서 처리하여야 하나 사무처리의 편의·경제성·국민의 편익 등의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는 사무임.

(2)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무의 분담 가능성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내 발생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상

당한 자치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 내에 발생한 재난 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 등을 자율적으로 수립할 권한을 부여해야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법률안(대안)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음.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 이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할 책임을 지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등은 필수업무의 지속적인 수행과 원활한 인력수급을 위하여 필수업무 종사자의 적정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처우 및 근무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① 시·도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되고, 시·군·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된다.
- ② 시·도 위원회 및 시·군·구 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③ 그 밖에 지역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중략…)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별 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 국가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권한의 위임·위탁)

- ①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 법률안(대안)의 이러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등을 통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마련할 것으로 평가됨.
 - 한편 법률안(대안) 제16조는 법률안(대안)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항)이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제2항)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률안(대안) 및 이에 대한 시행령을 통하여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제도적으로 국가(고용노동부장관) - 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비영리법인에 분담하는 것이 가능할 것임.
- 한편, 지방재정법 제21조 제2항은 국가가 스스로 하여야 할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하여 수행하는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음.
 - 따라서, 법률안(대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경우, 그 경비는 국가가 전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여야 할 것임.

(3) 구체적인 사무 분담

- 발표자께서 제안하신 정책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가. 필수노동자의 노동권과 사회권 보호

- ① 중앙정부: 실업급여 실효성 제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및 한시지원금 기준 완화
- ② 지방정부: 인력배치기준 현실화, 대체인력제도 실효성 제고 및 마련, 어린이집 운영의 공공성 강화, 노동정책 전달체계 구축

- ③ 노동센터: 필수노동자의 노동권익 보호, 필수노동자의 이해대변 기구 조직화 지원

나. 재난상황에 대한 필수노동자 지원정책

- ① 중앙정부: 백신 및 각종 예방접종, 건강진단 등 우선지원 필요, 안전수당 지급 확대, 가족돌봄 지원체계 및 가족돌봄 수당 등 지원 필요
- ② 지방정부: 방역물품지원 확대, 방역전담 인력지원 제도마련 필요
- ③ 노동센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 기관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자별 체계화된 대응 메뉴얼 제작,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 전달체계로서 재난 대응 노동정책 수요 발굴 및 프로그램 개발

☞ 상기 제반 정책의 필요성에 공감함.

- 이러한 정책들은 대부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급부행정과 관련된 것임. 기업 등 민간 부문의 추가적인 부담이 구체적으로 부각되지 않아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저항도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3. 남겨진 과제

- 필수노동자에게 필요한 것은 COVID-19라는 명백한 재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잠정적, 한시적 보호나 지원이 아니라, 필수업무가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지지하고 있다는 인식 위에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노동이 상시적, 항구적으로 정당하게 평가되고 보호받는 것임.
- 필수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있음에도 역설적으로 많은 필수노동자는 기존의 근로기준법의 적용에서 전부 또는 일부 배제되어 있음.
 -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필수노동자’라는 이름이 아니라,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의 보편적 적용일 것임.
- 필수노동자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법률안(대안)의 조속한 공포를 통하여 필수노동자에 대한 보호 정책을 집행하는 것과는 별도로, 보호의 공백없이 필수노동자들을 노동법과 사회보장법이 포섭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선이 필요할 것임.

www.labors.or.kr

(03191)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105 (관수동 152-1)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 5층
대표전화 02-6925-4349, 상담번호 1661-2020

^^^
서울노동권익센터